

제433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6)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1)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8)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1)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4)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8)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3)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8)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0)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4)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7)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1)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1)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1)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6)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5)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4)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2)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8)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6)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8)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6)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8)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5)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9)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4)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4)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4)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6)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4)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0)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3)

상정된 안건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6) 3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1) 3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8) 3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1) 3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 3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4) 3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8) 3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3) 3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8) 3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0) 3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4) 3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7) 3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1) 3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1) 3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1) 3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6) 3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5) 3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4) 3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2) 3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3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3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8) 4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6) 4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8) 4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6) 4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8) 4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5) 4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9) 4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4) 4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4) 4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4)	4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6)	4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4)	4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0)	4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3)	4

(15시14분 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야 간사 간의 사전 협의에 따라 장애인 선거 편의 증진 및 선거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기관 관련 법률안에 대해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심사 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6)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1)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8)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1)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4)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8)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3)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8)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0)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4)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7)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1)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1)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1)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6)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5)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4)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2)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8)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6)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8)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6)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8)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5)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9)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4)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4)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4)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6)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4)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0)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3)

(15시15분)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5항까지 이상 총 35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동완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현안 대응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 우리 위원회 입장을 성실히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장애인 선거 편의 증진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법안소위 자료, 제목에 ‘장애인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에 관한 사항’ 이 자료 목차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제 전문위원이 보고를 할 텐데요. 사전에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 보니 개정안 검토에 ‘가. 금치산자제도 폐지에 따른 선거권 제한규정의 정비’부터 ‘다. 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 확대 등’까지는 여야 간에 이견이 크게 없을 것으로 전문위원께서는 판단하신답니다.

그래서 저희 정개특위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가’·‘나’·‘다’ 이 부분은 법안

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합의가 되는 것은 합의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뒤로 빼도록 일단 그렇게 진행하고요. ‘라’부터 끝까지가 여야 간에 이견이 좀 있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전체로 발제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의견 듣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내용은 금치산자제도 폐지에 따른 선거권 제한규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 중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거나 이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서미화·용혜인 의원안은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는 내용이고, 박민규 의원안은 이를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서 금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됐는데 양쪽에는 행위능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의견 둘째 단락을 보시면 당시 개정 민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서 2018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선고 및 한정치산선고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치산자는 없습니다.

성년후견제도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미화·용혜인 의원안과 같이 현행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박민규 의원안과 같이 금치산자를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로 변경할 경우 2020년부터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부여되어 있는 선거권을 박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금치산자 규정을 삭제할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제19조제1호와 218조의8의 금치산자 관련 규정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4년에 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 의견을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개정안 중에서 서미화·용혜인 의원안처럼 18조 1항 중 제1호의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는 것이 명쾌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설명 들으셨겠지만 민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준병 위원** 218조의8은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다 동의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합의된 것으로 처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14쪽입니다.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대상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 외에 비방금지 대상에 장애를 추가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기존 허위 사실공표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의 장애에 대한 허위사실이 공표되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선관위가 이를 3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후보자와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특정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은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과 건전한 정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중처벌과 관련해서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그 조치를 3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는 선관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이의제기에 대한 조항들이 있는데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행정기본법에서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선거법 제110조의2에 따른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대상에 장애를 이유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건전한 정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낙선 목적의 장애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이의제기 시 상급 위원회에 3일 이내 조치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률안에 되어 있는데요. 소명자료 제출이라든지 검토 등 물리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선거법 제64조 6항 및 65조 13항에 따른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대한 허위사실 이의제기 처리는 규칙에 따른 관련 증명서류 제출이 3일입니다. 처리기한이 아니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을 3일 이내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8회 지방선거 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관련 이의제기 처리는 저희가 전체 22건을 처리했는데 그중 평균 소요시간이 3.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10조의2에 따른 이의제기는 전체 45건의 평균 소요시간이 5.6일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 개정안 처리

시에 처리기한 자체를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64조 6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방금 선관위 측의 의견은 전체적으로는 동의하나 이의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선관위 측의 의견을 준용해 줄 것 선관위 의견으로 냈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것 감안해서 가지고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사무차장님, 일단은 장애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허위사실이 공표되었을 경우는 당연한 거고 비방했을 경우도 당연한 건데 어디까지가 비방이고 어디까지가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례나 그런 것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비방에 대한 판례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실질적으로 제 선거구에서 20대 국회의원 총선 때 장애 문제가 비하가 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는 거지요. 장애 자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급되는 것 자체로도 장애인 후보자한테 불리한 것 아니냐 해서 비방의 기준을 상당히 폭넓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좋은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도 합의된 것으로 처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장님, 이의제기 처리기한은 좀 늦춰 주시면……

○소위원장 윤건영 예, 선관위 의견을 받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감사합니다.

○임종득 위원 3일이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필요 시에 10일을 연장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길지 않나 하는 생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선거 끝나서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빨리 합니다, 선거 전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 지방선거 때 처리 기간이, 110조의2에 따른 처리 기간이 5.6일이었습니다. 5.6일인데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선거 전날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거 당일까지는 마무리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임종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행정기본법에 있는 14일이나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좀…… 아까 5.6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 당겨 줘야만이 이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효용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 부분은 선관위가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이 법에 의해서 바꿀

부분은 아니니까 전체를 바꾸자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선거법에 따른 거는 조금만 현행대로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건 검토해 주시고. 또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에 대해서 정회용 의원안에 나와 있는 후보자 장애에 대한 허위사실일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포괄해서 선관위 측은 수용을 한다라는 말씀이지 않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벌칙 강화하는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18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선거비용 제한액을 110%로 확대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현행 50%에서 60%로 보전받도록 하며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에도 현재는 받을 수 없는데요. 선거비용의 1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후보자는 선거운동 수행 과정에서 활동보조인, 보조기기, 이동수단 등 추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동일한 기준으로 선거비용 제한액 및 보전액을 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비용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 및 보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선거운동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피선거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거보전 비용 제외 기준과 관련해서 현행 제도는 득표율 10% 미만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한 입후보자에 대해서 공적 재원의 투입을 제한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비장애인 후보자에 비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고 동일한 득표율을 달성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0% 미만 후보자에 대한 보전 제외 원칙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후보자에 한해서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 제도의 취지 및 형평성,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이 사안 역시 개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데요. 잠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서 정치 참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대할지 여부 등은 그 필요성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에 대한 수당과 실비 그리고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발송 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합산하는 게 아니고 국가선거는 국가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비용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수단 이용비도 선거비용에 합산하지 않는 정치자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선

거비용을 110%로 상향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전문위원님 검토처럼 득표율 5% 이상 10% 미만 후보자에 대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보전을 해 주는 것, 지금 법안에 따르면 10%를 보전해 줘니다마는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지금 당초 우리 선거공영제 입법 취지와 달리 예외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모든 중증장애인이 비장애인 후보자에 비해 재산이 적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예외를 인정할 타당성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 차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보조기기 그다음에 이동수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드니까 선거비용 제한액도 10% 더 하자, 이게 일견 타당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차장님은 이미 선거비용을 빼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설명하신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모든 게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예시로 든 그런 활동보조인…… 몇 가지는 선거비용이 아닌 거고요. 선거비용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일반 후보자보다 장애인 후보자가 더 소요되는 게 수어 통역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연설·대담 차량에 리프트를 설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선거비용으로 합산을 시켰다가 나중에 보전 대상이면 보전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 미만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보전을 하자, 이거는 지금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중대선거구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2인에서 5인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상 3인 이상 넘어가면, 낙선하면 거의 선거비용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거하고 우리 선거 중증장애인 이 문제가 같이 다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좋은 의견이십니다.

○서일준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앞서 사무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후보자 개인의 비용으로 전적으로 선거비용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일응 타당성이 있는 내용들인데, 국가는 또 지자체에서 들어가야 되는 돈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대하는 것과 또 거기에다가 유효투표수 현행 보전되는 것을 50%에서 60% 또 10% 이하까지 보전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인 혜택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돈이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또 중증장애인의 그런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장애 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고려해서, 형평성 차원

에서 보자면 선거비용 제한액 하나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선거비용 제한액은 그대로 두되 10% 이상 득표자에 대해서는 50%에서 60%로 좀 올리든지 택일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 이하 득표자에 대해 가지고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일단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칫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인 부담이 굉장히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송재봉 위원님.

○송재봉 위원 서미화 의원안을 보면 제한액을 110%로 한 이유가 장애인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상향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차장님께서 이것도 그냥 똑같이 하자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던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송재봉 위원 그런 게 가능하다,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장애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장애인 후보자보다 별도로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높여 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 비용 보전도 그에 걸맞게 저는 서미화 의원안처럼 이렇게 상향해 주는 것이…… 비용 부담은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중증장애인이 실제로 출마하는 비율 자체가 높지도 않을뿐더러 그분의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높여 주는 것이, 보전 비율을 높여 주는 것이 사실 형평에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조 위원님.

○조승환 위원 저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비용이 더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10%가 됐든 얼마가 됐든 올려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득표율이 낮다, 이게 다르게 관리하는 부분은 저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비용들이 지금 차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면 많은 큰 돈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실 국가 부담으로 해서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리프트라든지 수화 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실제로 자원봉사자를 쓴다든지 또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수화가 필요한 경우에 하면 복지 쪽에서 또 지원해 주는 포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이거는 확대를, 정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드는 지에 대한 필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수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보전 기준을 조정하고 더군다나 장애인이라고 해서 5%만 받아도 보전을 해 주겠다, 비장애인은 10% 이상 받아야 되는데 5%를 받아도 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저는 서미화 의원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차장님, 그동안 장애인이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었던 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정춘생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금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춘생 위원 왜냐하면 비용 보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전 비용도 저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10% 이상 받았을 경우 50%, 15% 이상을 받아야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저는 소수정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당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전에 중증장애인들이 출마할 수 있는 용기를 더 주기 위해서 보전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제가 조금 절충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체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선거비용 제한이나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중적이어서는 안 된 다라는 일부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고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득표율로 환산 하기는 어렵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어서 우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110%로 하자라는 서미화 의원의 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만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거비용 제한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넘어가고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서는 쟁점으로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서일준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선거비용 보전, 중대선거구제 5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 10%, 15%를 너무…… 그건 야박한 조항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따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이 선거비용 제한액 부분만 동의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는 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일준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차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거비용 제한액에 대해서 일부는 아예 선거비용에 빠진다. 그래서 그 항목이 뭐고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그 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장애인 관련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110%가 맞느냐 아니면 120%가 맞느냐 105%가 맞느냐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보자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조금 전에 정리한 대로 그렇게 하고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24쪽입니다.

24쪽 이하부터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청각장애인 선거인을 위해 수어 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또는 수어 QR코드를 책자형 선거공보에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희용 의원안 두 번째 안을 보시면 수어 영상으로 출력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의무화하고 반면에 김소희 의원안은 이걸 재량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희용 의원안은 이에 대해 둘 다 선거비용 보전 해당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희용 의원안2에 대해서는 미표기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정희용 의원안2는 바코드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요. 김소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체계상 대통령령이 아니라 선관위 규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는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개선입니다.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하도록 하고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대상 선거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추가하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경우에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 가능한 디지털화된 선거공보 제출 방식 등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예지 의원안 첫 번째를 보면 바코드 갈음 규정을 삭제하고 디지털 파일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무화할 경우 현재 점자출판시설이 전국에 35개소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인력 및 제작 여건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보윤 의원안의 경우에는 현행 점자형 선거공보가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범위 내에서 작성되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이 양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균택 의원안의 경우에는 후보자별로 정보를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해당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35쪽입니다.

선거공보와 관련해서 마지막 사항은 시각장애 외 장애선거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작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과 같은 시각장애 외 장애선거인을 위해 음성·점자·수화 또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를 작성하고 해당 사항을 선거공보뿐만 아니라 선거공약서에서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주호영 의원안의 경우에는 ‘음성·점자·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 또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 대상 및 선거공보의 형식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법적 명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최보윤 의원안, 서미화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보전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의 내용은 선거방송광고에 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는 것을 현행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보운 의원안의 경우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원활한 통역을 위해서 현재는 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한국수어통역사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이를 의무화할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는 후보자, 방송시설 등의 비용 부담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이고 방송협회에서도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의무화하는 것은 보도·편성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방송사의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량규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의 최보운 의원안의 경우 현재도 의무화되어 있는 수어통역과 관련해서 수어통역사를 2인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통역사 수까지 규정하는 것이 달성하려는 취지에 비해서 다소 과도한 규제는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64쪽입니다.

64쪽의 개정 내용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승강기 및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유도블록, 이동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마련을 투표소의 제반시설로서 규정하며 투표소 이동을 지원하는 투표사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들은 법문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취지를 갖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나와 있는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규칙도 이동약자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이 있는 곳에 설치하고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로 이동약자 보조 투표사무원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해당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70쪽입니다.

70쪽의 개정 내용은 투표보조의 대상에 장애 유형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서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투표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을 시각 또는 신체 장애자 외에 발달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까지 추가를 하고 또한 최보운 의원안과 서미화·용혜인 의원안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 외에 공적보조원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공적보조원은 밑에 보시면 ‘국가에 의해서 지정·지원되어 투표소에서 장애인 등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선거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 규정 내용에 어떤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공적보조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행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에 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적보조원이 추가될 경우에 직접선거 및 비밀선거의 원칙 침해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이와 같은 지적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은 장애인을 위한 투표용지 작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일반 현행 투표용지에도 소속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와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사용을 의무화하며 그림, 마크, 심벌 위주의 발달장애인용 투표용지를 도입하고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현행도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의견에 따르면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특수투표용지는 사용하지 않고 투표보조용구만 제작·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최보훈 의원안과 서미화·용혜인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미지 기반 투표용지 또는 보조용구가 투표소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선거 일정 내 대량 인쇄 및 가공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인데 해당 인프라가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그림투표용지 및 선거용 보조기구의 제공을 청구한 사안과 관련해서 그림투표용지 도입의 경우에는 사전 준비를 위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반면 선거용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성희 의원안은 선상투표나 거소투표에 대해서도 투표보조용구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선상투표의 경우 팩시밀리를 통해 투표용지 등이 수신되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보조용구를 우편 등을 통해 선상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한해서 투표보조용구가 발송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지방선거가 배제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구 수가 너무 많고 발송 시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투표보조용구 활용이 제외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개정 내용은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장애인단체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등 장애인의 참정권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또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3쪽에 보시면 다음 내용은 장애인인 피고용인에게 투표시간 청구 가능 안내를 의무화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고용주가 장애인인 피고용인의 장애 유형·정도 및 특성을 고려해서 본인 또는 근로지원인 등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하려는 것인데요. 상당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보았고요.

다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현행도 비장애인의 경우 고용주가 투표 가능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포함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장애인에 대한 안내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거나 현시점에서는 안내 의무만 부과하고 법 시행 이후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에서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노약자·장애인 등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기준에 노약자·장애인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이 손쉽게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현행 조사 방식 외에 대면 조사나 온라인 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식의 병행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기관의 인력·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조사 실시를 의뢰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부칙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먼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이 2024년 기준 263만 명이 넘는 현실에서 장애인 선거권자를 위한 선거제도를 반영하려는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내용의 법률안 발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편의 제고를 위해 여러 여건을 반영한 최선의 방안을 계속 발굴하며 차근차근 도입해 왔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해서 장애인 유권자나 단체로부터 아쉬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바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논의하는 의원님들의 개정법률안 중에서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내용입니다마는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적 여건 및 선거 관리 형편상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사안별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정희용 의원님, 김소희 의원님 안입니다.

책자형 선거공보의 청각장애선거인의 접근성 강화와 관련해서 입법취지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정희용 의원안의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 의무화나 또 김소희 의원안의 경우처럼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 QR코드 표시 재량화를 하도록 하는 경우 현재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한글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어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수단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정희용 의원안처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후보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이 부분은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9쪽, 김예지·최보운·박균택 의원님 안입니다.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개선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안이 개별적으로 오히려 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선거권자 보장을 위한 사회 기반시설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점자출판시설이 전국에 36개밖에 안 됩니다. 김예지 의원안과 박균택 의원님 안에서 65조 4항을 개정해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화하고 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에 국내 점자형 선거공보를 인쇄할 수 있는 점자출판시설이 36곳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특히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원선거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점자형으로 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예지 의원안에서 디지털 파일 작성을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에 한정할 경우에 점자정보 단말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선택권을 축소할 소지도 있고 또 디지털 파일 제출을 USB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선거공보에 QR코드를 삽입해서 디지털 파일만 제공하는 형태가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5페이지, 주호영·최보운·서미화·용혜인 의원안은 시각장애 외 장애선거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작성 관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주호영 의원안의 경우 시각장애 외 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의 경우에도 과연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문맹률이 높다는 근거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최보운·서미화·용혜인 의원안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 등 작성 비용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할 경우에 새로운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후보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 불균형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8페이지, 정희용·최보운 의원안입니다. 선거방송광고에 수어 또는 자막방영 의무화 관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청각장애 선거인의 알권리와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으로 변경할 경우에 그리고 또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의 보도 편성의 자유를 제한해서 방송사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방송사업자의 의견이나 또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어서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는 현재의 결정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와 정책토론회 등에서 원활한 통역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자는 최보운 의원안의 경우 만약 입법화가 되고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용이 가능하겠습니다.

64페이지, 정희용·최보운·서미화·용혜인·김성희 의원님의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확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도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라는 투표소 자체가 선관위 소유 건물이 아니라 학교 등 공공 부문이나 민간 부문의 사회기반시설을 임차하여 임시로 며칠만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희용 의원님 것처럼 점자유도블록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곤란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최보운·서미화·용혜인 의원안의 경우 작년 대선 기준으로 전국 1만 4295개 투표구마다 환경적 요인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투표 편의시설이 갖춰진 모든 것을 확보하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여건상 아주 오래된 건물에는 1층도 아니고 승강기도 설치되지 않은 곳에 저희들이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저희들이 선거일 투표소에 투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이 98.8% 그리고 사전투표소는 94.5%를 갖췄습니다. 선거 때마다 계속 더 노력합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 선관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성희 의원안의 경우 임시기표소 설치 근거와 투표 절차 등을 법과 법의 위임에 따라 규칙에 규정함으로써 투표 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그 부분은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용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투표 보조 대상에 장애 유형 확대 관련입니다. 정희용·김예지·박주민·최보운·서미화·용혜인·이인영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요.

투표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 보조 대상의 범위를 고민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개정안 입법 취지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동의합니다. 혼자 기표하는 것이 곤란한 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기대됩니다.

다만 검토의견처럼 의원님들의 안이 개별적으로는 장애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또 스스로 기표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에게까지 투표 보조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투표보조인의 의사가 우선시되는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비밀선거의 원칙이나 직접선거 원칙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투표현장에서는 이런 전화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내 아이는 발달장애로 후보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같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보조해야 한다’ 이러면서 투표 보조를 명목으로 대리투표를 행사하려는 사례도 실제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투표보조인의 횡수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명의 시설관리자가 6명 이상의 발달장애인과 동행하면서 투표보조를 요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히 발달장애인이 직접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절차를 쉽게 설명한 책자나 영상을 선거 때마다 제작하고 또 연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투·개표 안내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본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투표 보조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으로 명문화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투표하려는 장애인의 의사를 반드시 존중하되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1명과 활동보조인, 공적보조인 1명 등 2명 또는 모두 한 사람씩만 지원하도록 하고 보조 지원자는 2회 이상 투표 보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같이 드립니다.

80페이지, 최보윤·서미화·용혜인·김성희 의원님의 장애인을 위한 투표용지 작성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의원님들의 개정안처럼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투표용지를 도입할 경우 발달장애인의 특징으로 인한 투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투표용지 변경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후보자의 사진을 삽입한 투표용지를 전면 제작하기 위해서는 투표용지 규격을 지금보다 새롭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최소 가로·세로 4cm 이상으로. 그리고 그에 따른 현재 선관위가 갖고 있는 사전투표장비, 심사계수기라든지 투표지분류기 등 개표장비도 전량 교체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법정 시한 내에 과연 전체 선거인 수만큼의 4색도 인쇄가 가능한 인쇄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등 현실적인 제약이 지금 존재합니다.

한편 우리 중앙선관위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칭 이미지 투표보조용구 관련 정책 연구용역을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과정에서는 실제로 발달장애인 십여 분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후보자의 사진이 들어가는 투표보조용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정 시한 내에 4색도 인쇄가 가능한지 그리고 기표 홈을 뚫는 작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봤고요.

그다음에 여러 종목 소량으로 인쇄가 돼야 되는 특성상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림 투표보조용구 역시 공직선거에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소요 비용이라든지 시간,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희 의원안의 경우 시각장애인 거소 선상투표자에게만 특수 투표용지를 제공한다면 이 역시 선거인이 특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지방선거에서는 투표보조용구 종수가 너무나 다양하고 또 점자출판시설 수가 전국에 36곳밖에 없는 등 제한적이다 보니까 거소투표자 발송용 투표보조용구 제작 공정을 추가한다면 오히려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할 때 사용할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제작에 필요한 시간 확보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소투표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투표보조용구를 발송하는 부분도 대통령선거와 총선에서는 현행처럼 가능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92쪽, 기타의 구·시·군 토론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장애인단체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최보운 의원안인데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장애인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지 여부는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대담·토론회 등의 원활한 주관·진행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 유권자의 권리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93쪽, 서미화·용혜인 의원안, 장애인인 피고용인에게 투표시간 청구 가능 안내 의무화 이거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장애인에 대한 안내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만 한정해서 고용주에게 부과되 다만 그 과태료 고지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94쪽,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노약자·장애인 등의 특성을 반영하자는 구자근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처럼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선거 여론조사를 하려면 여론조사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장애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마지막 98쪽 부칙과 관련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말씀드린 지금 논의하는 사항 중에 위원님들의 합의로 수용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인 공포 후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6개월 이후로 늦춰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덩어리로 발제한 부분은 선관위 의견이 좀 신중검토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감안해서 가지고 의견 주실 분 있으면 주시고요.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사무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여러 장애를 가진 분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후보자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후보자한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확대되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이게 참정권 보장과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 또 적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각종 선거공보물 대부분이, 대부분이라 이야기 안 하더라도 상당수가 유권자들이 선관위에서 봉투째 보낸 공보물을 뜯지도 않고 그대로 폐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기존의 선거공보물조차도 의무화 조항을 재량 조항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다 추가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이런 시설 조치까지 해야 될 경우에는 일

단은 선관위라든지 정부의 부담도 있을 수 있고 또 후보자 개개인의 부담 또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점자 인쇄라든지 아니면 수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국 사례도 중요하고 현재 판결도 중요하고, 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도저히 이 부분은 현재 우리의 물적·인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좀 짚어 주고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구요.

제 생각 같으면 가급적이면 의무화보다는 재량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상호 간에 이해 관계를 좀 절충시키는 그런 것이 그나마 수용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개개 후보들한테 개개 후보들의 공보물, 특히 지방선거 같은 데는 엄청나게 후보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보물에 이런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관위 차원에서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냥 개략적으로라도 하나의 요약편이라고 그럴까요, 한두 장 정도 후보자들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 공보물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조치들을 했을 경우에는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다른 대안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전에 사무차장님 의견을 쪽 들었는데요. 선관위에서 수용한 의견 두 가지가 딱 눈에 띄었는데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64페이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확보 부분에 있어서 김성희 의원안, 제반시설에 임시표소 추가하는 걸 세부 규칙으로 법률에 반영하는 부분은 선관위에서 수용 입장이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이니깐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니 정개특위가 가능한 장애인의 이러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에 대한 보장을 최대한 한나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합의로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사무차장께서 말씀 주셨던 71페이지, 투표보조의 대상에 장애 유형 확대와 관련해서는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셨지만 선관위에서 나름의 안을 낼 수 있을 걸로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보조 대상에 장애 유형을 확대하는 부분들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선관위 안을 여기에 수정안으로 넣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 보는데요.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장님, 아까 이것도 가능한 부분이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정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서 위원님.

○서일준 위원 차장님, 그러면 장애선거인을 추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중증장애, 발달장애……

○소위원장 윤건영 서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

○서일준 위원 70페이지, 개정안 내용에 보면 현행은 신체장애로 인한 분들만 보조를

두는데,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서일준 위원 추가로 하는 게 중증장애, 발달장애, 정신적 장애 등을 가진 장애선거인을 추가한다는 내용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서일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은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금 현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투표관리자분들과 장애인분하고 또 옆에 보호자분하고 약간 언쟁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본인이 투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보조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장애인인데 왜 못 하게 하느냐’, 그런 현장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들 구·시·군선관위로 연락 오고 시도선관위로 연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법문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 중에서도 거동 못 하는 사람이 있고 본인이 직접 거동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장애인들은……

○서일준 위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거동할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이 하고 보조인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분들은 보조인을 해 가지고 실제 운영한다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법문 그대로입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서일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행 법률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에 대해서 한다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현행 법률은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면 선관위 입장은 대상자만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유권자 입장……

○서일준 위원 투표보조인은 현행대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투표보조인에 대해서 제가 안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현행대로 하는 안이 있고 지금 최보운 의원하고 서미화·용혜인 의원안에서 말씀하신 공적보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시설에 장기간 있었던 분들이 보호자로 같이 다 따라오시는 분이 사전에 소위 말하면 세뇌 같은 것을 시켜서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지 않고 투표소에 있는 누군가를 딱 지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그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적보조인 1인 또는 장애인이 지명하는 한 분 플러스 공적보조인 한 분, 두 분이 들어오시거나 공적보조인 한 분이 들어오시는 방향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현행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명한 두 사람.

○서일준 위원 가족 한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가족은 한 사람이어도 되고.

○서일준 위원 한 사람도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가족이 아닌 분은 두 사람이어야 됩니다.

○서일준 위원 이거하고 그러면 추가로 공적보조인을 더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공적보조인을 두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은 한 명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공적보조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호자로 오시는 시설관리자 한 분에다가 공적보조인 한 분 해서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서일준 위원 이렇게 하면 나타나는 문제점은 비밀투표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공정성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공적보조인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수반이 돼야 됩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런데 지금 현행안처럼 단순히 시설의 보호자 이런 분 두 사람이 들어가서 했을 때는 그 두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명에 대해서 보조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사실상의 직접투표가 아닌 대리투표를 해 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서일준 위원 하여간 선관위에서 최대한 공정성 있게 고민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사실 공정성의 문제라고 하면 가족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요, 애초부터.

차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가족 같은 경우도 아까 처음에 말씀……

○소위원장 윤건영 가족이라 그래서 그게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게 어딴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자녀의 의사에 전혀 반해서 부모의 뜻대로 투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1인과 공적보조인 한 명이 같이 들어가서 두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래서 이것은 논란을 길게 끌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한번 만들어서 제안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 보고 논의하면 될 거고.

기본적으로 투표보조대상에 장애 유형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죠,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선관위에서 안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을 옛날 구닥다리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행 시각·신체 장애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건지 안을 제출해 주시면 다음 회의에서 이것은 정리하면 되지요.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지금 간사님 이야기하는 것 100% 동의합니다. 참고로 그것을 검토하실 때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선거를 쭉 치러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신장애인 숫자보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장기간 시설에서 계시다가 선거기간에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겠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자기가 원해서 찍고 하는 부분들이 불가능해요. 안 그러면 전부 다 그게 유효한 투표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를 고려해 가지고 참정권을 부여하되 또 비밀투표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다르게 투표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망라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장애인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에 관한 내용은 앞서 논의한 대로 합의된 부분은 합의된 것으로,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은 쟁점으로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0페이지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다음 회의 때 제출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판단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의결은 모아서 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5항까지 선거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기관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회에서 소위자료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16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자료 목차를 보시면 개정 내용은 크게 여론조사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사항과 가상번호 의무화 관련 사항으로 대별됩니다.

쭉 설명을 드리면, 먼저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은 선거여론조사 실시 서면신고 의무의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서면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 2일 전에 여론조사 설계신고를 서면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대상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제삼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기관 및 단체는 단순히 조사 수행 역할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정당의 경우는 내부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부남 의원안과 같이 1호 및 2호를 제외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8쪽입니다.

8쪽의 개정사항은 선거여론조사기관 실태점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실태점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면서 실태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인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이게 양부남 의원 안이고요. 여심위의 직무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는 한민수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민수 의원안의 경우에는 여심위의 직무 범위에 실태점검을 포함시키는 간접적인 방식인 반면에 양부남 의원안은 실태점검을 별도로 구체화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서 제재사항을 명시하는 등 실효성 확보 수단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실태점검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거짓응답 지시·권유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던 규정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해서 일반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까지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다수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금지행위의 범위를 넓히면서 규제 범위가 넓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해당 금지행위에 관한 조항이 여론조사에 대해 거짓응답을 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인데요.

다만 차이가 있는 점이 한민수 의원안의 경우는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규칙에 요구되는 등록요건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정춘생 의원안과 위성곤 의원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23쪽입니다.

23쪽 개정 내용은 선거여론조사기관 재등록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사유 및 기간을 현행 1년보다 확대합니다. 영구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여론조사 관련된 죄를 범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2년 이내에 다른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또 추가로 위성곤 의원안은 등록취소 사유에 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를 제삼자에게 3회 이상 위탁한 경우와 1년 이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벌금형 기준만을 할 경우에는 징역형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외의 범죄행위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제재 사유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한민수 의원안의 경우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를 재등록 금지 사유로 추가하고 있는데요. 유사한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식 의원안과 정춘생 의원안같이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의 비례성 및 타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성곤 의원안의 경우에서 등록이 취소된 기관의 대표자 및 구성원에 대해 재취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표자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성원의 경우에는 위법한 여론조사에 대한 관여 정도와 관계없이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8쪽입니다.

28쪽의 개정 내용은 여론조사 개시 전 여론조사 일정 공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이 없고 다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이광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개시 전에 피조사자 등에게 여론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이고요.

위성곤 의원안은 이를 구체화해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거나 일정에 따라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양 개정안 모두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위성곤 의원안이 모두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40쪽입니다.

40쪽 개정 내용은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은 선거일 후 6개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그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형배 의원안은 1년까지, 이광희·위성곤 의원안은 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고 박정훈·윤준병 의원안은 아예 그 자료를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일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의 보관기간은 해당 행위로 인한 수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와의 관계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에서 공소시효는 단기 공소시효 6개월

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직선거의 공소시효를 1년으로, 이광희 의원안은 5년으로 확대하고 있는 개정 내용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년까지 보관하도록 할 경우에는 자료 관리 부담 증가, 자료 유실 가능성 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박정훈·윤준병 의원안같이 자료 일체를 여심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일괄 제출에 따른 행정 부담과 자료 관리·보관 책임의 집중으로 인한 운영상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1쪽입니다.

51쪽의 개정 내용은 공표 또는 보도 목적이 아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을 의무화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규제대상이 아닌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사전적으로 —이광희 의원안에만 해당합니다—등록의무를 부과하거나 사후적으로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등록, 제출 또는 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사전 등록의무와 관련해서 현재는 등록의무가 없는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기관에게 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선거여론조사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유출할 경우 여론이 왜곡될 우려가 있고 인지도가 낮은 후보를 포함하여 대중에게 노출하거나 의도된 질문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는 등 여론 형성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후 제출의무에 관해서는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의무부과의 정도 및 의무위반 과태료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7쪽입니다.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 실시 의무화 관련 내용입니다.

배준영 의원안 내용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품질평가의 주체가 되는 경우 공적 기관에 의한 관리·감독을 통해 품질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은 사적 영역에 대한 일정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 및 독립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서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연구기관·전문단체와의 협력 방식 등을 통해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1쪽입니다.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형배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기간인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까지 중 공표금지 시작일을 현행 ‘선거일 전 6일부터’에서 ‘선거일 전 1일부터’로 늦추어 전체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 이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알지 못하고 투표에 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가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과 선거일에 임박한 조사 결과가 가져올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6쪽입니다.

개정 내용은 법 위반행위의 홈페이지 공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고발·기소되거나 또는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다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고발 또는 기소된 사실만으로 위반행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부남 의원안과 같이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위반행위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과태료 1000만 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를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고발 또는 10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1년간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쪽입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분석전문인력 연 1회 의무교육입니다.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력에 대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분석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횟수 1회가 적정한지,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5쪽 내용입니다.

특정 시간대에 한정한 여론조사 실시 금지, 이해식 의원안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 실시 시 금지되는 행위로 ‘특정 시간대에만 조사하여 특정 계층의 피조사자가 많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특정 시간대에만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않는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시간대별로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투입하더라도 응답자 확보가 용이한 특정 시간대에 응답 완료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7쪽입니다.

공표·보도 전 등록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지역·일시·대상 등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관련 사항을 규칙이 아닌 법률로 정할 경우에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속한 개정·보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의 성격 및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기준은 2014년 제정 이후 열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잦은 변경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83쪽입니다.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12시간 전 등록의무 부과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시점을 현행 ‘공표·보도 전’에서 ‘공표·보도 12시간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유권자가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공표·보도 12시간 전으로 설정할 경우에 여론조사 실시 이후 공표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신속한 공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6쪽입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벌금형 또는 과태료를 2회 이상 받아 그 합계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등록취소와 소액의 벌금·과태료 처분 사이에 영업정지 처분을 신설함으로써 제재 수단의 간극을 좁히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미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법은 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서의 등록을 통해 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 자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정지를 처분할 경우에 그 기간 중 선거여론조사 외 다른 여론조사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명령의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벌금형과 과태료 합계의 액수가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88쪽입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한 광고 금지입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한 광고로 벌칙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부당한 광고의 유형을 명시하여 해당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바람직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거짓·과장된 광고 등 부당한 광고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제재 기준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고, 제4호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유형의 광고’라는 문구는 규칙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왜곡 공표·보도 금지의무의 목적 추가 및 처벌 강화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왜곡 공표·보도 금지의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라는 목적을 추가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선택형 규정에서 징역형으로 일원화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행 법체계상 형벌체계의 형평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 규제가 과도한 수준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징역형만으로 규정된 조항은 아주 무거운 중죄에 해당하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과연 이 부분을 징역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보도 행위보다 방송·통신 경영자의 왜곡 보도·논평 행위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개정안이 입법이 된다면 해당 규정의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6쪽입니다.

선거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상향입니다. 송재봉 의원안인데요.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 관련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의 법정형을 보시는 바와 같이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 안 중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벌칙 수준을 현행과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송재봉 의원님 안과 각 의원님의 벌칙 수준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2쪽입니다.

지금부터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과 관련된 기간의 단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과 관련된 기간을 단축하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 외에 문자 기반의 웹조사 방식의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번호 제공 관련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단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사업자들은 근무일 기준으로 개정안 일자에는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웹조사 방식에 가상번호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상번호를 허용함으로써 여론조사의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웹조사 방식 역시 실제 해당 번호 사용자가 응답하는지 확인이 어려운 점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0쪽입니다.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 시 가상번호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보도 목적으로 전화 이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현행 재량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휴대전화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가 표본의 대표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조사가 다른 방식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또 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조사와 가상번호를 활용한 조사 간 예측정확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필요성과 조사비용 증가에 따른 여론조사기관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5쪽입니다.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론조사기관의 선거여론조사 시 목적과 무관히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해식 의원님 안입니다.

앞서는 의무화고 지금은 재량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표 또는 보도 목적의 조사를 삭제해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 모두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앞서와 같습니다.

1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개념 구체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선거여론조사의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명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정안에서 유형으로 지정하고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와 ‘정당 또는 인물에 대한 지지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나 국정수행 평가, 탄핵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는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2쪽의 부칙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선관위 의견을 주시기 전에 제가 사전에 좀 정돈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인데 다뤄야 될 조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이 제안을 드리면 사무차장께서는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 주시되 선관위에서 수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토론에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법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문위원회에서도 발제하시면서 선관위 입장을 녹여서 부정적 의견을 담아서 쪽 정리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숙지하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선관위에서 생각하는 수용 가능 또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 또는 입장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씀 주시면 토론이 훨씬 더 원활해지고 생산

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여론조사가 정당의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공표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언론이나 유권자들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와중에 최근 몇 년간 여론조사를 둘러싼 국민적 비판과 불신이 상당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여러 의원님들의 법률안 발의에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선거여론조사 실시 서면신고 의무 예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된다면 지금처럼 조작질하는 여론조사 이런 부분을 훨씬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면신고 건수가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안에 넣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인력이라든지 예산수반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 실태점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자는 한민수·양부남 의원님 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수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민수 의원님 안 중에 제8조의9제6항에 있는 ‘이 법 위반 여부’라는 그 앞에다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거짓응답 지시·권유 등의 대상 확대, 이 부분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공감하면서 동의합니다.

17쪽,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 이 부분은 현재 규칙에 있는 것을 법률로 가져가는데요. 사실은 규칙에 있다가 법률로 갖고 가게 되면 향후 여론조사 환경 변화에 따른 법률 개정이 쉽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십시오.

23페이지, 마번 선거여론조사기관 재등록 금지 기간 확대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약간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안처럼 구성원의 범죄 경력을 등록의 제한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기관이나 여심위가 이를 열람이나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고요. 또 위성곤 의원안처럼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구성원의 재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등록 금지 기간과 관계없이 범법행위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이 새로운 유사 명칭의 선거여론조사기관을 설립해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8쪽, 여론조사 개시 전 여론조사 일정 공개행위 등 금지, 이 부분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요. 다만 이광희 의원님 안의 경우에 여론조사 개시 전에 피조사자 등에게 여론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경우에는 지금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제한해

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쪽,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일체의 보관기간 연장, 이 부분은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보관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벌칙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주관적 요건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선거법 268조(공소시효)와도 연계돼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 버렸는데 이것을 계속 보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박정훈·윤준병 의원님 안에 있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경우에는 여론조사 관련한 물량 예측의 불가능 그리고 보관 장소의 문제, 보관 방법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고요. 108조 9항 여심위의 자료제출요구권을 활용한다면 여심위에서도 여론조사기관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론조사기관에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51쪽, 공표 또는 보도목적이 아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의무화, 이 부분 마찬가지로 해당 조항이 입법화된다면 소위 말하는 1인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조작질을 하는 여론조사를 최대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국에 59곳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기관도 등록하도록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심위의 업무량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이므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는 비공표용 여론조사기관까지도 등록요건을 갖춰서 등록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7쪽, 여론조사품질평가 실시 의무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언론이라든지 학계의 검토의견도 있었고 그것을 반영해서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정책연구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종합평가지수는 엄밀성, 중립성, 투명성, 정확성 순으로 비중을 두고 우수, 보통, 미흡이라는 3단계 등급으로 절대평가 하자 그리고 여심위가 아닌 학술단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작년 12월 1일 날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좋은 여론조사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던 현재 기관들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받는다면 아니면 다른 기관과 큰 차이가 없는 평가를 받는다면 선거여론조사가 매출액의 한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선거여론조사를 회피하게 돼 가지고 오히려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평가기준 역시 실제 개표했을 때 개표 결과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성이 더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분과 아니다, 정확성은 선거여론조사의 본질과는 다르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웠고 평가 주체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아닌 학회라든지 아니면 학계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2014년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창설 이후에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여심위의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면서 여론조사기관들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소위 반발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평판까지도 여심위가 직접 수행할 경우 국가기관이 너무나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품질평가를 해야 된다면 품질평가의 주체는 전문성을 고려할 때 관할 선관위가 아니고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61페이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기간 단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선관위에서도 2023년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아예 폐지하는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여론조사 업계에서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참고로 2023년 세계여론조사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7개국 중에 53개국에서 공표금지 기간이 아예 없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런 부분 반영을 해 주십시오.

다만 민형배 의원님 안처럼 했을 때 사전투표 한 사람에 대해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사실상의 출구조사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반영한다면 출구조사 부분을 지금 현행 투표소로부터 50m 이내 선거 당일만 허용하는 것을 사전투표소에서도 허용할지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 드립니다.

66쪽의 법 위반행위의 홈페이지 공개, 이 부분 개정안 취지와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중앙여심위에서도 고발이나 10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한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공개한다면 사실은 유죄 확정할 때까지는 빠르면 6개월, 길면 이삼 년이 걸리다 보니까 효율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70쪽, 선거여론조사기관 분석전문인력 연 1회 의무교육, 이 부분 저희들은 찬성합니다.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실제 결과 분석을 담당하는 59개의 여론조사기관에 소속된 분석전문인력이 총 20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연평균 한 8200만 원 정도면 저희들이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연평균 예산이 한 3억 3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의 뒷받침 없이 막바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안에 도입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된 다음에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75쪽, 특정 시간대에 한정한 여론조사 실시를 금지하자, 이 부분은 그 취지는 괜찮지만 실제 여론조사 회사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주십니다. 오전·오후·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만 조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간대별로도 성별·연령별·지역별 할당을 분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를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77쪽, 공표·보도 전 등록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처럼 향후 여론조사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속한 개정·보완이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83쪽,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12시간 전 등록의무 부과, 이 부분은 사실은 선거여론조

사기관으로 정한 사항 17개를 공표·보도 12시간 전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경우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직원들은 조금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표·보도 전까지만 등록하면 되는데 12시간 전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일찍 알 수 있지만 일반 유권자들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전에 볼 수가 없으므로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성 인식하는 부분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해당 의무를 위반할 때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12시간 전 등록의무를 부과하면서 과태료까지 같이 부과할지 이 부분은 한번 정책적으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86쪽, 영업정지 처분을 신설하자, 강력한 제재를 하자는 개정안의 취지에 저희들 동의합니다.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데 사실은 선거법이라든지 각종 관련 규정에서 영업정지라는 조항을 벌칙으로 가져온 사례가 없어서 만약에 영업정지 조항이 도입이 된다면 이 부분은 그런 용어 자체가 선거법에 처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88쪽, 여론조사기관의 부당한 광고 금지, 영업 활동의 일환인 사적 영역의 광고 행위 위반을 선거법에 적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검토의견처럼 부당한 광고의 의미와 행태가 약간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규제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규칙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문제 이것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약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91쪽, 왜곡 공표·보도 금지의무의 목적 추가 및 처벌 강화,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데 만약에 박정훈 의원안에서 선거에 관한 문구 이게 없다면 모든 여론조사가 제한 대상이 되어서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는 현재의 ‘선거에 관한’보다도 그 제한 대상이 더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96쪽,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상향, 이 부분 처벌 강화 여부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처벌 강화 취지가 반영되려면 현재 108조 1항·2항·6항·9항 위반에 대한 처벌 대상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주관적 요건도 삭제하여야 훨씬 처벌 강화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2쪽,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과 관련된 기간 단축,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관련해서 이동통신 3사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기술적으로는 가상번호 제공 기간을 5일이나 6일 이내로 단축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공휴일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서 가상번호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또 서버 용량 한계로 시스템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의 의견도 주시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상번호 제공 기간을 5일이나 6일로 줄이는 것은 우려는 있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가상번호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하는데 현재 휴대전화 고객용 회선 수가 전체 한 5653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통신 3사가 갖고 있는 게 4620만입니다. 81.7%를 차지하고 알뜰폰 가입자가 1032만, 18.3%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알뜰폰은 가상번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업체 구조적으로 가상번호

호를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남아 있는 4620만 중에 현재 가상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사람이 357만입니다. 해마다 100만, 150만 명, 120만 명씩, 건수로 2022년에는 102만 명, 2024년에는 194만 명이 자기는 가상번호 제공을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현재 한 357만 건 정도가 가상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 기반 웹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허용하는 부분이 저연령층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신사에서는 그것을 개발하는 데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또 새로운 조사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스미싱 우려가 있다는 것, 가상번호 비용 상승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0쪽,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 시 가상번호 사용의무 부과 부분, 마찬가지로 가상번호 제공이 안 되는 알뜰폰 사용자 그리고 가상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의무조항으로 강제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115쪽, 여론조사기관의 목적과 무관한 가상번호 사용, 아까 의견과 같습니다. 알뜰폰 사용자와 가상번호 제공 거부 이용자가 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의무조항으로 강제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117쪽, 여론조사 개념을 구체화하자, 이 부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는데 다만 개정안 1호에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지금 너무 광범위해서 모든 여론조사가 여기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나 국정수행 평가, 탄핵에 관한 여론조사 역시 담임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므로 향후 선거에 관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법률안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2호에서도 정당 또는 인물에서 인물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대로 특정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정안처럼 만약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조항이 법률에 마련이 된다면 현재 8조의8 8항에 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그 규정을 그대로 둘지, 삭제할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혹시나 합의가 돼서 하시더라도 그 시행 시기는 저희들이 그 관련 규칙 개정이라든지 준비기간, 개정사항 안내 등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후인 공포 후 6개월 정도 이후 시행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데, 아울러 양부남 의원안에 여론조사기관 분석전문인력 연 1회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 그리고 사업 시행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대략 어렵잡아서 한 10여 개 항목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도 수용과 유사한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압축되는 느낌이 좀 들고요. 위원님들도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오늘 이것을 일일이 다 토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금 사무차장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그것을 다음에 제대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전에 위원님들이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고 정리해서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어떠실까요?

○배준영 위원 제가……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각자 의견은 이야기하시고요. 진행에 대해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준영 위원 진행에 관련해서…… 아니, 좋은데 기왕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는 좀 발언을 하고 싶어서……

○소위원장 윤건영 예, 발언은 하시고요. 그래야지 선관위가 또 입장을 바꾸든지 할 수 있으니까 방금 전문위원과 선관위 의견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들은 하시고 오늘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사무차장께서 정돈해 주신 것을 다시 좀 정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면 훨씬 더 집중도가 있을 것 같아서……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안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부분은 배준영 위원님하고 이해식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이 세 분이신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차장님, 여론조사라는 게요 제가 보니까 정치적 의사결정과 여론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여론조사가 잘못되고 그러면 그거에 오도돼 가지고 후보가 낙선되거나 당선될 수 있으니까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관위라든지 심의위원회가 심사한다 그래서 그것을 관이 억압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것은 확실히 기준을 세워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좀 답답한 내용이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선관위에서 그런 세미나도 열고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좀 더 취지를 제대로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왜냐면은 저는 갤럽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선거 여론기관을 평가하자는 게 아니었고요. 개별 선거 여론조사 건건을 평가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건을 평가할 때마다 열댓 명 되는 선거심의위원회가 다 모여 가지고 그것을 심의하면 밑도 끝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런 의견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수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F라는 함수에 넣어 가지고 그냥 그걸 산출해 가지고 등급을 매길 수도 있고 요즘 AI가 있지 않습니까? 넣어서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표본의 크기거든요.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닙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지도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배준영 위원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1000개보다는 1만 개가 더 정확한 그런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있고.

두 번째는 표본추출의 대표성인데 모집단 대비해서 무작위로 균형 있게 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중치가 적용이 제대로 됐느냐, 네 번째 이거는 좀 주관적인 거라서 빼겠습니다. 질문 문항의 중립성이고요. 다섯 번째는 응답률입니다. 응답률이 많은 게 좀 더 고품질 아닌가요? 그것도 의견을 달리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

○배준영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간이 그 사안이 벌어진 직후에 났는지 아니면 아주 늦게 났는지 이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원자료를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신뢰성의 문제고요. 여덟 번째는 오차범위 그리고 아홉 번째는 타 조사와의 추세와 일관성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21대 선거에는 2.3% 차이로 이기고 22대 때는 11%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22대 때 선거 하루 전날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제가 겨우 1%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 후보가 문자도 수만 개 뿌리고 전광판에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열 가지 기준에 보니까 되게 이상한 자료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문자를 받아 보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상한 여론조사니까 믿으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겨우 500개 정도 하고 질문도 편향적이고 응답률도 낮고 자동응답을 했는데 이게 어느 샘플로 해 가지고 어느 특정당 지지자들인지 보편적인 것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런 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관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개별 평가하는 거고, 그 개별 평가하는 것도 이런 함수라든지 AI를 이용하면 즉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기준 정도는 좀 세워 줄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좋은 의견……

잠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 기준에서도 응답률이라든지 표본 수라든지 추출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정리를 해서 등록을 시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률이 엄청나게 높았을 때가 좋은 여론조사냐, 저도 개인적으로 응답률이 높아야 좋은 여론조사라고 생각하지만 여론조사업계에서는 꼭 응답률이 높고 낮음을 탓하지를 않고요.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어디 있는지는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가 좀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저희들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윤준병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고, 이해식……

○**윤준병 위원** 이해식 위원님 안 하시고? 먼저 할게요, 그러면.

차장님, 저는 이번 기회에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감독 하고 있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통신사들의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이 부분 공히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론조작이라든지 악의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 발의된 내용과 관련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취지가 옳으면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이렇게 만들면 보완이 가능하든지 이런 의견을 주셔야 실질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잖아요. 그냥 ‘총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면 완전히 면피성 발언이에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

다음에 회의할 때는 지금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총론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졌고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이러이런 내용으로 보완을 하면 좋겠다든지 예를 들면 ‘선거 관련 여론조사’ 이렇게 돼 있는 것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이렇게 예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는 더 적다고 그랬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내용이 오히려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이거나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인 경우에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내용은.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넣어 놓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대응을.

또 저는 안심번호 추출하는데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안심번호 소스가 적어지면 여론조사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안심번호와 관련해서 고갈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앞으로 안심번호에 의한 여론조사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 줘야지 그냥 ‘현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알뜰폰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동의 안 받으면 그렇고요’, 그러면 동의받도록 의무화를 공적으로 필요하면 해야지요. 저는 이런 노력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 줘야 된다.

지금 그냥 면피성으로 문제만 제시하고 실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민이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데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 실제 경선이든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대적인 기반인데 ‘고갈 현상이 발생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말아 버릴 겁니까?

저는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각 분야별로 노정돼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다음 회의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동의가 가능한 내용이라면 부분적인 문제가 예상되는 내용은 어떻게 치유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까지 반영해서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이 안건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제가 얘기할 내용을 윤준병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은 명태균 사건이 터지면서 도저히 여론조사를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근본적인 회의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국힘에서 경선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게 정당한 경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됐는지 아주 의심스러운 그런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정 국민의힘 정당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당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도저히 여론조사기관, 특히 어떤 랭킹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여론조사기관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아까 선관위 등록된 게 오십몇 개라 그랬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59개입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런 1인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또 쉽게 돼 있어요. ARS 기계만 있으면 사실 여론조사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비공표형 여론조사기관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식 위원 비공표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그것을 활용해서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뒤로 이렇게 대가를 받게 되고 컨설팅이나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이걸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 나타났던 문제점들 하나하나 지적해 가지고 제가 법안 개정안에 담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여론조사업체들의 어떤 일반적인 견해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해요, 저는 솔직히. 선관위가 이런 여론조사기관의 문제, 여론조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 하는 입장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니,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분명히 갖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갖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안심번호만 하더라도 이게 랜덤하게 뽑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보니까 제공을 거부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다 고갈되고 있다 이렇게 볼 얘기가 아니지. 고갈되고 있다고 얘기할 건 아니지요, 사실은.

그리고 알뜰폰도 제가 보기에 이거 기술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충분히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알뜰폰을 취급하는 작은 회사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안 된다고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방법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선관위가 오늘 검토했던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되는지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가 다음 심사를 할 때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개괄적으로 쪽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의 쟁점마다 수용 가능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왜 수용이 안 되는지 이것을 명시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토론회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는데요. 배준영 위원님 또 윤준병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말씀처럼 여론 조사와 관련해서는 앞서 사무차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다가 위원님들 당부를 좀 더 해서 안을 정돈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법안 심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앞서 오늘 여야 간사 간에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도 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논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정개특위 1소위에서 이야기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이야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임종득 위원님 손 드셨고 조승환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앞은 순서대로 쪽 가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광역 시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각 정당별로 후보자들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광역 시도의 의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헌법불합치 판정이 난 장수군과 나머지 8개 군과 관련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울릉군이나 옹진군처럼 이렇게 도서로 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나머지 8개 중에 6개가 일반 군이지만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구가 적더라도 1개 군에는 도의원을 1명은 내야만이 그 도의 어떤 전반적인 이해관계들을 설명도 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내에서 인접 시군의 읍면동을 붙여 가지고 인원을 맞추려고 하는 검토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대표성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촉박한 상태에서 이 부분들이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존의 군의 어떤 대표성들을 유지하고 현 지자체의 경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저도 임종득 위원님하고 동일한 의견입니다. 구 단위의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구 단위의 광역의원 자체를 없애 버린다, 이 부분은 단순히 인구수만으로서 이렇게

결정할 부분은…… 현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고려가 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보도가 하나 났습시다라는 진보 4당하고 민주당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추진한다라고 보도가 났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바로 2년 뒤에 있을 국회의원선거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이건 정말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제대로 논의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아까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중대선거구제에서 대여섯 명 나오면 사실 1등, 2등 정도 아니면 어떻게 보면……

당선된 사람은 지지율에 상관없이 보전받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떨어지면 무조건 그거는 보전 못 받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정말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단순히 다수 여당과 진보당, 소수당들의 어떤 논의에 의해서 결정될 부분은, 정치적으로 결정될 부분은 정말 아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잠시만요.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한규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춘생 위원** 우선 위원장님께…… 지금 위원장님이 행안위 간사도 맡고 계시고 그리고 법안소위 위원장도 맡고 계시면서 정말 강행군을 해 오시면서 오늘 정개특위도 계속 열여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개특위 논의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쟁점들이 많은 부분 상당수 해소가 돼서 벌써 선거구 획정을 해서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 지금도 이미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의 사정도 저는 많이 인정은 합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지만 또 인구 대표성 부분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다음 정개특위에서는 좀 진전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합의문의 취지를 바탕으로 해서 적어도 4월 10일 전까지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서 다음 주는 매일매일 회의를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쟁점들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는 매일매일 정개특위 할 테니까 위원님들 시간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저는 비슷해서 생략하고……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낼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중에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9개 지역구에 대한 결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 범위를.

우선 현행 법체계에서 조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룬이 있는 영역을 빨리 넓혀서라도 그걸 조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정 범위를 넓힐 거냐 또는 도서지역까지 특수 상황을 넣을 거냐 하는 내용에 대한 합의를 빨리 해서 이 부분 정리를 하면 일주 헌법불합치와 관련된 내용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특히 불가피한 영역, 그렇게 해도 해소 안 되는 부분은 부득이 시군 간에 일부 조정하는 이런 역할로 해서 한 3단계로 조정하면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된 9개 지역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내용은 꽤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야 간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앞서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걸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어쨌든 다음 주에는 다들 시간 비워 놓으시고요. 매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저는 법안에 대해서 한 번, 못 물어본 게 있어 가지고.

28페이지에 여론조사 개시 전 여론조사 일정 공개행위 금지 이거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 보통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차장님.

뭐냐 하면 가령 경기도지사 경선을 다음 주에 한다 이러면 그때는 다 스탠바이 해 가지고 우리 편이 많이 응답되도록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이상식 위원 사실상 이게 저희 국회의원 경선 때도 그랬거든요. 경선 일자가 공개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금 규칙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이거를 막는 데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금 법률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

○이상식 위원 제한을 하고 있다고요? 하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하려고 하니까.....

○이상식 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법률로 정해 주면 거기에 따르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이렇게 행해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아무런 위법성의 인식이 없이 하고 있던 일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실상 이건 우리가 지금 다 해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할

수 있도록 풀어 줬었는데 이거를 법률로 가져와서 제한을 하려고 하니깐 저도 이 부분은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식 위원** 저는 이걸 과잉 제한 금지다, 법률로서 모든 것을 규율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의견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비례대표 지금 10%잖아요. 그렇지요? 10%인데 이걸 좀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역에서도 여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선거제도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는 이걸 한 10%에서 15% 정도로, 한 5%만 지금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입장벽 있지 않습니까, 5%? 그것도 좀 낮춰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이 3%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정춘생 위원** 그거 헌법불합치 판결 받았어요.

○**이상식 위원** 그것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차제에 한번 그것도 대폭 내려 가지고 지역에서 많은 정당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더 추가……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소위원장 윤건영**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아까 저도 회의 중에 민주당과 야 4당의 합의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1번에 되어 있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2년 지방선거 대비 확대한다, 이 건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 두셨으면 좋겠다. 이 합의 내용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무투표 당선을 없애고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조항이 합의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새로운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중대선거구제로 운영이 되어 있던 곳을 쪼개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법에 혹은 부칙으로 담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3인 선거구를 2개 합쳐서 2인 선거구 3개로 만든다든가 4인 선거구를 2개로 쪼개서 2인 선거구 2개로 만든다든가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간곡하게 이번 법안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꼭 동참하셔서 이것을 담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다 무시하고, 야 4당에서, 여당에서 다 해 버렸는데 뭐. 정개특위 우리 허수아비들만 다 앉아 있는 거네.

○**소위원장 윤건영** 잠시만요.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는 좀 집중해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죄송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관련해서요 저는 이게 15% 정도가 아니라 20% 정도는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에서 다음 주에 회의 들어올 때는, 저희가 지금 광역의 경우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3분의 2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임미애 위원 그랬을 때 20% 비례 의석을 확대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좀 해 보고, 다양성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가 확보될 수 있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를 함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지금 가능하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 답변 들어도 될까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일단 5% 봉쇄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8회 지방선거 대비 5% 봉쇄 조항 자체가 없어지더라도 전체 지방의원 중에는, 비례대표 의원 중에는 경기도에서만 그 당시 국민의힘 의석이 하나 줄고 정의당 의석이 하나 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임미애 위원 봉쇄 조항 없었을 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봉쇄 조항 없었을 때요.

그다음에 20%로 했을 때는 현행에 비해서 민주당 의석은 5석이 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석은 4석이 줄입니다. 그다음에 정의당 의석은 1석이 줄입니다, 8회 지선에 비했을 때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비율을 높여서가 아니고 그 당시 그 시점에 정당의 득표율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과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8회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8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까 같은 약간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 아닌 그런 방향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나요?

○조승환 위원 아니, 비례대표……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 상호 간에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고……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소위원장 윤건영 잠시만요. 임미애 위원님 발언 끝나고 나서……

○임미애 위원 발언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런데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진행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어떠한 결정 사항이 있으면 저희 당한테도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회의를 해야지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알아서 하니까 여기 앉아 있어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회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이야기하시고 충분히 풀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김한규 위원님 먼저 이야기하시지요.

○김한규 위원 조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은 내용인데 오늘 저희 당하고 야 4당하고 같이 협의한 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개특위에서 그리고 또 여야 교섭단체 간

에 논의해서 처리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야 4당이 추진의 방향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정한 거지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는 거는 협의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내용도 예를 들어서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정개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할 때 여야 합의 처리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정춘생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촉구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응답하고 싶었고 저희 당도 일정 부분, 모두 다 동의하는 건 아니고 야 4당의 요구 사항에 공감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라는 의사표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양당 정개특위 간사하고 또 원내 지도부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협의를 존중하고 있는 거고 그거하고 무관하게 저희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정하려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잠시만요.

서일준 위원님 발언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저희가 아마 윤건영 위원장님과 양당 원내 수석끼리 해서 투 플러스 투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지금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실은 황당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이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부 다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왜 반대를 합니까? 반대한 적도 없고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낙인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아주 반가운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잠시만요, 그렇게 발언 중이면……

○서일준 위원 다만 저희들이 지금 전체 국민들 여론이 어떻느냐, 과연 국회의원이고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 하느냐, 숫자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있다.

그다음에 기초 같은 경우에는 비례를 늘리면 지역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7인 같은 경우에 비례가 한 분이고 지역이 여섯 분인데 비례를 두 분을 늘리면 지역이 다섯 분밖에 안 돼서 지역밀착형 의회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 제가 가급적이면 간사 입장으로서는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낙인 찍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저께도 지금 투 플러스 투 해 가지고 일정 부분 합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저도 이거 보고 황당한 거예요. 마치 민주당하고 진보 4당

이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 합의한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반대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배준영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좀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제가 마무리 겸 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일준 간사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지금 정개특위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밑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이렇게 정개특위 소위를 통해서도 회의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의 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야 4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제가 보도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제목만 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내용은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물론 그런 의지의 표명조차도 국민의힘 당에서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논의가 진행 중인데 특정 정당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잘 풀어 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잘 다독거리면서, 협의하면서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도 익히 알고 있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정개특위를 매일 개최한다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고된 작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정개특위 매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일정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다음번 정개특위 회의, 계속 오늘 한 열 번째 강조합니다, 다음 주부터 매일 한다라는 거.

시간 관계상 논의를 종료하고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김문수 김승수 김은혜 김재섭 김한규 박덕흠 배준영 서일준 송재봉 윤건영
윤준병 이상식 이해식 임미애 임종득 정춘생 조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문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박현도